[별표 2] <개정 2001.7.16, 2006.6.30>

비파괴검사 목적 이동사용시의 허가기준

(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관련)

구 분	기 준
1. 장 비	○방사선 투과 검사장비 : 5대 이상 ○방사선 측정장비 －방사선측정기 : 5대 이상 －방사선경보기 : 10개 이상 －포켓도시메터 : 10개 이상(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) ○방사선 방호장비 －콜리메터(10밀리미터 이상) : 10개 이상 －경고등 : 10개 이상 ○방사선원 운반 전용차량 : 4대 이상(승용차를 제외한다)
2. 기술인력	○면허 취득자 －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취득자 : 2인 이상(이중 1인은 방사선투과검사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) －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: 2인 이상 ○기술자격 취득자 －비파괴검사 기사 : 1인 이상 －비파괴검사 산업기사 : 2인 이상 －비파괴검사 기능사 : 2인 이상